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
주십시오.

제 목 : 한국은행 충북본부,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

- 한국은행 충북본부(본부장 한승철)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 지원(2,572억)의 기한을 1년 연장(2024.7월 → 2025.7월)하기로 하였음
 - (배경) 취약·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,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(내용) 2024년 8.1일부터 2025년 7.31일까지(1년간) 지원 요건(업종, 신용등급 등)에 부합하는 금융기관(은행)의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예정
 -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4년 8월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 기업을 중심으로 운용
 - (기대 효과) 도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및 금융접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
※ 자세한 내용은 (붙임) 참조

문의처 : 한국은행 충북본부 업무팀 과장 김주형, 조사역 전수현

Tel : 043-220-0571, 0584

Fax : 043-220-0545

“한국은행 충북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> > 지역본부 > 충북본부)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

한국은행 충북본부

(붙임)

한국은행 충북본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연장 시행방안

□ 지원한도 : 2,572억원

□ 지원대상 : 충북지역 소재 중소기업

○ (업종*)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주점업, 부동산업, 금융·보험업, 사행시설, 병의원, 수의업,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배제**

* 복수업종 영위 업체의 경우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'주된 업종'을 기준으로 판단

** <참고 1> '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' 참조

— 금번 연장시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'수의업'과 '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'을 추가(2024.2~7월중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)

○ (신용등급*)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여력이 양호한 고신용(1~3등급) 및 중신용(4~5등급) 중소기업은 제외

*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 제99조의 업무보고서 별책서식 중 「여신종별 신용등급별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 현황」에 따른 신용등급

— 2024.2~7월중 기 취급된 중신용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지원(2024.8월부터 신규취급 불가)

○ (업체당 한도) 업체당 은행 대출취급실적 10억원 이내로 제한*

* 단일업체가 복수의 대출을 받는 경우 전체 대출금의 합계가 10억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대상에 포함

○ (중복지원) 여타 금융중개지원대출(이하 '금중대')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*

* 기존 금중대 관련 대출 상환(대환대출 포함)시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.

- **(지원대상 제외 대출금)** 아래 각각의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
 - 최종부도거래처·폐업업체·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에 대한 대출금
 - 금융기관의 수시입출금방식 대출금
 -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정책금융으로부터 대출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 대출금(단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)

□ **배정방식**

- 본부 및 각 지역본부는 배정된 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**은행 대출취급실적**(말잔 기준)의 **75%** 해당액을 지원*
 - * 본부 및 각 지역본부별 은행 대출취급실적에 대한 지원액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비례 배분
 - 기 취급된 **중신용(4~5등급)**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**50%의 지원비율**을 설정(신규지원은 불가)
- 금번 배정분은 **여타 부문***으로 전용하여 **사용 불가**
 - *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중 전략지원부문, 특별지원부문, 일반지원부문 등

□ **지원기간**

- **은행 대출취급기간 : 2024. 8. 1일~2025. 7. 31일**(1년간)
- **당행 지원기간(배정 기준) : 2024. 10. 1일~2026. 8. 31일**
 -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(1년 이내)까지 지원

□ **지원금리 :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2.00%***를 적용**

- * 향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의거 변동 가능
- **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,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

□ **시행일 : 2024년 8월 1일(은행 대출취급 기준)**

<참고 1>

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대상 제외업종

업종명	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IC, 제10차)
전문 소매업	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
운송관련 서비스업	52915 주차장 운영업
주점업	5621 주점업
금융 및 보험업	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부동산업	68 부동산업
전문 서비스업	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
교육 서비스업	855 일반 교습학원
보건업	86 보건업
오락관련 서비스업	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